

순창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630호 2026. 8. 18.

조 례

○ 순창군 조례 제3061호 순창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1
○ 순창군 조례 제3062호 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13
○ 순창군 조례 제3063호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	24
○ 순창군 조례 제3064호 순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8
○ 순창군 조례 제3065호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32
○ 순창군 조례 제3066호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49
○ 순창군 조례 제3067호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 조례	57
○ 순창군 조례 제3068호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61
○ 순창군 조례 제3069호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63
○ 순창군 조례 제3070호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65
○ 순창군 조례 제3071호 순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67
○ 순창군 조례 제3072호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70

규 칙

○ 순창군 규칙 제1333호 순창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칙	72
○ 순창군 규칙 제1334호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74

고 시

○ 순창군 고시 제2026-154호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75
○ 순창군 고시 제2026-156호 도로명주소 직권 폐지 고시	76
○ 순창군 고시 제2026-15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78
○ 순창군 고시 제2026-160호 적성면 괴정지구 개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80

공 고

○ 순창군 공고 제2026-813호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2
○ 순창군 공고 제2026-814호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2
○ 순창군 공고 제2026-815호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8
○ 순창군 공고 제2026-816호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1
○ 순창군 공고 제2026-817호 순창군 고문번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29
○ 순창군 공고 제2026-824호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4
○ 순창군 공고 제2026-825호 순창군 금고 지정 계획 공고	143
○ 순창군 공고 제2026-832호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2

회								
람								

발 행 : 순창군 (편집 기획예산실)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61호

순창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자치법규 조문상에 반영되지 않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체계적 통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용 제명, 조문, 법률용어 등 정비) 순창군 각 부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규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이 조례는 시행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목록(제2조 관련)

연번	관리부서	자치법규명	조항호목	현행	개정
1	기획예산실 (기획)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나목, 제23조제2항	「공무원 직무 발령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령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2	행정과 (행정)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3	행정과 (행정)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특별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4	행정과 (행정)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1조제1항제4호, 제21조제2항제1호	특별법 제40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
5	행정과 (행정)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6	행정과 (총무)	순창군 공인 조례	제1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7	행정과 (총무)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16항제3호	근로자의 날	노동절
8	행정과 (총무)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제3호	인사혁신처장관	인사혁신처장
9	행정과 (총무)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제4호	「공용차량관리규정」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연번	관리부서	자치법규명	조항호목	현 행	개 정
10	행정과 (총무)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제7호	인사혁신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
11	주민복지과 (희망복지)	순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
12	주민복지과 (희망복지)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4호	4. “복지위원”이란 제8조제4항의 기능을 수행하며, 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읍면장이 추천한 명예직 위원을 말한다.	<삭 제>
13	주민복지과 (희망복지)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4호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삭 제>
14	주민복지과 (희망복지)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장 제목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	주민복지과 (희망복지)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제5호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삭 제>
16	주민복지과 (희망복지)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8조(복지위원의 위촉 및 절차 등) ① 법 제44조와 관련 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복지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	<삭 제>

연번	관리부서	자치법규명	조항호목	현행	개정
				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읍면별로 각 2명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주민복지과 (통합보장)	순창군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
18	주민복지과 (통합보장)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5항	법 제18조의3	법 제18조의7
19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	순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20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	순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연번	관리부서	자치법규명	조항호목	현 행	개 정
21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9조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3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4조,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24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25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1조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6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	순창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16조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7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3조의3제1항, 제32조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8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1조제1호	여성가족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29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	순창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제2조제1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연번	관리부서	자치법규명	조항호목	현 행	개 정
30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순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순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31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순창군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32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순창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3호	요보호아동	보호대상아동
33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순창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입양특례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34	주민복지과 (아동복지)	순창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5. “입양기관”이란 입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삭 제>
35	건강장수과 (장수특구)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순창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36	건강장수과 (노인복지)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제1조	내지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규정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규정
37	인구정책과 (도농교류)	순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8	재무과 (재산관리)	순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순창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취업규정」	「순창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39	재무과 (재산관리)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4항제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번	관리부서	자치법규명	조항호목	현행	개정
40	재무과 (재산관리)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기목	기획재정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41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순창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4조	순창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42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5조, 제 20조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3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시설)	순창군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1조제 2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44	문화관광과 (도서관운영)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1조제 2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45	문화관광과 (문화유산)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1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46	민원과 (지적)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 15조	제 15조(도로기반시설물정보의 공유항목) ① 도로기반시설물정보에서 공유할 사항은 도로굴착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와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에서 공개가 가능한 정보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정보의 공유항목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 통합관리에 관한 지침」 제 10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47	민원과 (건축)	순창군 건축 조례	제 21조제 7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48	민원과 (건축)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4조제 3항	「순창군재무회계규칙」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번	관리부서	자치법규명	조항호목	현 행	개 정
49	경제교통과 (지역경제)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5조	「순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순창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50	경제교통과 (기업유치)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제23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51	경제교통과 (교통행정)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순창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규정」	「순창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52	경제교통과 (교통행정)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3	경제교통과 (교통행정)	순창군 주차장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4	안전재난과 (안전총괄)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55	안전재난과 (안전총괄)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조례	제2조제2호나목	향토예비군	예비군
56	안전재난과 (안전총괄)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조례	제2조제2호바목	작전	지원
57	안전재난과 (안전총괄)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조례	제3조제4항제5호	350군사안보지원부대 순창군담당	국군 제335방첩부대 방첩관
58	안전재난과 (안전총괄)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조례	제3조제4항제6호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군담당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59	안전재난과 (안전총괄)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조례	제3조제5항제3호	제7733부대 제3대대 작전과장, 순창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제7733부대 제3대대 정보작전과장, 순창경찰서 경비정보안보과장
60	안전재난과 (안전총괄)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조례	제7조제2항	「순창군 통합방위에규」	「순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지침」

연번	관리부서	자치법규명	조항호목	현행	개정
61	안전재난과 (자연재난)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 제2조제3호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62	안전재난과 (자연재난)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제17조제2항	「순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조례」
63	안전재난과 (자연재난)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제130조
64	안전재난과 (자연재난)	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조례	제1조	「지진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65	안전재난과 (자연재난)	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조례	제5조제4항제1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66	안전재난과 (자연재난)	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조례	제7조제2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67	건설과 (도시계획)	순창군 계획 조례	제15조의2제1항 제2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68	건설과 (도시계획)	순창군 계획 조례	제57조의2제3항 제2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69	건설과 (도시계획)	순창군 계획 조례	제62조의2제2항 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70	건설과 (도시계획)	순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71	건설과 (지역개발)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15조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번	관리부서	자치법규명	조항호목	현 행	개 정
72	농촌활력과 (공공주택)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73	환경위생과 (환경정책)	순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6조, 제10조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4	환경위생과 (환경정책)	순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라목	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5	환경위생과 (환경정책)	순창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제2조제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
76	환경위생과 (자원순환)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77	환경위생과 (자원순환)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4제2항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78	환경위생과 (환경지도)	순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9	환경위생과 (위생)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3호	3.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80	상하수도과 (수도행정)	순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제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

연번	관리부서	자치법규명	조항호목	현행	개정
81	상하수도과 (수도행정)	순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제5조제1호	수질규칙 제9조	법 제17조제1항
82	보건사업과 (건강증진)	순창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83	의료지원과 (원무)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제22조	「순창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순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84	의료지원과 (원무)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제23조제4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5	의료지원과 (원무)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제23조제4호	「순창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순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86	농업축산과 (농정)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	제8조	「순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순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순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87	농업축산과 (농정)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9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88	농업축산과 (축산방역)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가목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의 라목
89	농업축산과 (축산방역)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90	농업축산과 (축산방역)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호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
91	농업축산과 (축산방역)	순창군 축·수산물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연번	관리부서	자치법규명	조항호목	현 행	개 정
92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
93	농업기술과 (농촌자원)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순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94	장류산업 사업소 (장류산업)	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62호

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산편성 과정” 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 이라 한다)”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을 “사람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 2호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순창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중 “따라 예산편성 시” 를 “따른 예산과정에서의” 로, “예산편성 관련” 을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으로 한다.

제4조 중 “예산편성 시부터” 를 “예산과정에서” 로 한다.

제5조 중 “예산 편성” 을 “예산과정”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를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연도의 한도액,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군수가 해당연도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7조제1항 중 “예산편성” 을 “예산과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 을 “온라인” 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를 “예산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예산편성” 을 “예산과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 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를 “위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년” 을 “2년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조정
5.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의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제1항 중 “예산편성” 을 “예산과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분과위원회” 를 “각 분과위원회” 로 한다.

- ② 분과의 설치는 매년 군정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때” 를 “경우” 로 한다.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회의록 공개)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지원 등” 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로 한다.

제4장에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회의의 위원은 읍·면별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읍·면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2. 지역 현안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3.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
4.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5. 기타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운영) ①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 센터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이 된다.

③ 지역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지역회의의 대행) 군수는 지역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에 지역회의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소집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지역회의 예산안 검토) 군수는 지역회의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지원 등

제5장에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u>예산편성 과정</u> 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 (이하 “ <u>예산과정</u> ”이라 한다)-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u>자</u> 를 말한다. 1.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u>자</u> 2. 순창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u>자</u> <u><신 설></u>	제2조(용어의 정의)----- ----- <u>사람을</u> -----. 1.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u>사람</u> 2. 순창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u>사람</u> 3. <u>순창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u>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u>따라 예산 편성 시</u>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u>예산편성 관련</u>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 <u>따른 예산과정에서의</u> ----- ----- <u>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하</u> ----- -----.
제4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예산편성 시부터</u>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 ----- <u>예산과정에서</u> ----- ----- -----.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u>예산 편성</u> 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 ----- ----- <u>예산과정</u> ----- -----.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군수는 <u>예산을 편성하기 전에</u>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u>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는 본예산 편성에</u>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 <u>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연도의 한도액, 주민의 의견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u> ----. ② <u>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군수가 해당연도에</u>

현행	개정안
<u>한하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u>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u>예산편성</u>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u>인터넷</u>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u>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u>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지 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u>예산편성</u>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로 구성한다. -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을 한 <u>자</u> -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u>자</u>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u>자</u> <신설>	<u>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u>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u>예산과정</u>-----.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u>온라인</u>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u>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u>-----.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u>예산과정</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u>사람으로</u> -----. ----- <u>사람</u>----- ----- <u>사람</u>----- ----- <u>사람</u>----- 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u>청년·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정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u> ②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u>3년</u> 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 ----- <u>위촉한다.</u> ②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u>2년</u> 으로 하고 ----- ----- ----- ---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u>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u> 2. <u>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u> 3. <u>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u> 4. <u>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u>	제13조(기능)----- ----- 1. <u>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u> 2. <u>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u> 3. <u>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u> 4. <u>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조정</u> 5. <u>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u> 6. <u>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의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u>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u>예산편성</u> 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u>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군의 업무 분야별로 행정분과, 농림분과, 지역개발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한다.</u> ③ <u>각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u>	제15조(분과위원회) ① ----- <u>예산과정</u> ----- ----- ----- ② <u>분과의 설치</u> 는 매년 군정 여건 및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③ <u>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으로 구성하며,</u>

현행	개정안
④ <u>분과위원회</u>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간사 1명을 둔다. ⑤ ~ ⑧ (생략) 제1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u><신설></u> 제18조 (생략) <u><신설></u> 제4장 <u>지 원 등</u> <u><신설></u>	<u>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④ <u>각 분과위원회</u>-----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해촉)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u> 5. ----- ----- <u>경우</u> 제18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0조(교육 및 홍보)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u>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u>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현행	개정안
<신 설>	포함하여 7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읍·면별 공개모집, 추천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읍·면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2. 지역 현안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3.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 4.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5. 기타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23조(운영) ①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이 된다. ③ 지역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4조(지역회의의 대행) 군수는 지역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에 지역회의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현행	개정안
<u><신 설></u>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u>제25조(회의소집 및 의결)</u> ①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소집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신 설></u>	<u>제26조(지역회의 예산안 검토)</u> 군수는 지역회의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u>제5장 지 원 등</u>
<u>제19조</u> (생 략)	<u>제27조</u> (현행 제19조와 같음)
<u><신 설></u>	<u>제28조(포상)</u>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u>제20조</u> (생 략)	<u>제29조</u>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63호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창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군민의견 수렴·공감대 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순창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의 특수성·기술성 등 고도의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나 장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64호

순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순창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04에 둔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6조(입주단체의 의무) 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입주단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③ 허가기간의 갱신 또는 기간의 연장, 허가의 취소, 청문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④ 군수는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9조(이용대상)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회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
2. 보훈회관의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 유지 및 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운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수탁기간 또는 입주기간 중에 시설물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65호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창군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를 말한다.
3. “비조성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말한다.
4.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5.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7.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9.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이란 화장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12.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산분(散粉)”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얻어진 골분을 일정한 장소에 뿌리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 관내(이하 “관내”라고 한다)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봉안문화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 유도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자연장 유도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비조성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추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7조(사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기준) 사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은 각각 영 제15조 별표2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영 제15조 별표2, 영 제18조제1항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 없이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의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제방의 둑
3. 하천·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4.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9조(공설장사시설 설치)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부지선정) 군수는 최적의 공설장사시설 설치 부지를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제11조(공설장사시설위원회) ①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장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순창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순창군의회 의원 1명

2. 장사(葬事)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2명

3. 사회단체 대표자 등 10명 이내

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⑩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공설장사시설 설치 규모, 지역의 범위 등
- 2. 공설장사시설 설치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 3. 군수가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 설치와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주변마을 지원)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유치 지역 주변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5조(사용신고)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는 사용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③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용자의 자격)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사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도 사용할 수 있다. 단, 군수는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가족(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이 사망한 경우 및 봉안유골 또는 분묘를 개장한 경우. 이 경우 사망자가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었더라도 이를 인정한다.
2. 군에 있는 분묘를 개장한 경우
3. 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외국인을 포함한다)
4.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또는 안치되어 있는 경우
5. 법률상 출생지가 순창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신고 수리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신고를 한 봉안시설 및 자연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하는 경우
3. 봉안시설 및 자연장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4. 사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아니한 경우
5. 제26조를 위반하고 군수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사용신고를 한 자가 봉안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7. 군수가 추모공원 관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할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사용료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6조의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별표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로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20조(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4. 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외국인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무연분묘는 법 제28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2조(사용권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 순으로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②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연고자의 신고의무) 공설장사시설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연고자의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24조(관리책임) ① 공설장사시설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고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은 벌초 등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제25조(원상복구 및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금지행위 등) ① 공설장사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매장 또는 봉안 및 자연장하여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과 그 밖에 군수가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설장사시설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
2.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기간
2. 관리위탁 방법
3. 시설관리
4. 시설 임대료
5.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 조건

6.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의 수리, 취소, 사용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던 운영비 잔액과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군에 귀속한다.

제28조(위탁기간)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위탁기간 중 수탁자가 공설장사시설의 수탁관리를 포기하려는 때에는 위탁 취소 예정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와 협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관리권을 양도하거나 수탁한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하는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공설장사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위임) 군수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당과 매점, 카페테리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4조(봉안시설 시설기준 및 사용기간) ① 봉안시설에는 개인단·부부단 및 무연고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5조(유골 봉안 및 인도) ① 봉안하는 유골은 봉안함의 규격에 맞는 유골함에 안치하여야 하며, 유골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대장을 갖추고, 봉안함에는 대장에

기재된 번호 및 성명을 붙여야 한다.

③ 사용권자가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으려면 연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봉안시설의 안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자연장의 시설기준 및 사용기간) ① 자연장에는 개인장·부부장·가족(종중)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분장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자연장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군으로 위임한다.

제37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장의 경우 위치 및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이 끝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산분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3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설장사시설 명칭 및 위치(제14조 관련)

시설종류	시설명칭	위 치	비 고
봉안시설	추모관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14번지 일원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14번지)	
자연장지	제1자연장지 (잔디장)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14번지 일원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14번지)	
	제2자연장지 (수목장)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14번지 일원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14번지)	
산분장지	산분장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14번지 일원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14번지)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제18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사 용 료 (6개월 계속 거주)		사 용 료 (6개월 미만 거주)	
		유치지역 (풍산면)	관내지역	유치지역 (풍산면)	관내지역
제1자연장지 (잔디장)	개인장 (1위, 45년)	250,000	500,000	500,000	1,000,000
	부부장 (2위, 45년)	5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가족(종중)장 (8위, 45년)	2,000,000	4,000,000	4,000,000	8,000,000
제2자연장지 (수목장)	개인장(공동) (4위, 45년)	300,000	600,000	600,000	1,200,000
	부부장 (2위, 45년)	600,000	1,200,000	1,200,000	2,400,000
	가족(종중)장 (8위, 45년)	2,400,000	4,800,000	4,800,000	9,600,000
봉안시설 (추모관)	개인단 (1위, 15년)	150,000	300,000	300,000	600,000
	부부단 (2위, 15년)	300,000	600,000	600,000	1,200,000
	무연유골(1위, 5년)	50,000	100,000	100,000	200,000
산분장지	산분처리	10,000	20,000	20,000	40,000

※ 사용료에는 관리비가 포함된다.

[별표 3]

보안시설 연차별 환급률(제19조제2항 관련)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6개월 이내	70%	5년초과 ~ 6년	40%	11년초과 ~ 12년	10%
6개월초과 ~ 1년	65%	6년초과 ~ 7년	35%	12년초과 ~ 13년	7%
1년초과 ~ 2년	60%	7년초과 ~ 8년	30%	13년초과 ~ 14년	3%
2년초과 ~ 3년	55%	8년초과 ~ 9년	25%	14년초과 ~ 15년	0%
3년초과 ~ 4년	50%	9년초과 ~ 10년	20%		
4년초과 ~ 5년	45%	10년초과 ~ 11년	15%		

[별표 4]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20조제1항제2호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66호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를 “구성하고” 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군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 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종전의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군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u>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u> ,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원장은 평가는 하지 못하고 회의 진행만 한다.	② ----- ----- ----- ----- ----- <u>구성하고</u> ----- ----- ----- .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u>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u> 1. <u>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 2. <u>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 3. <u>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 ② <u>심의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u>

현행	개정안
제9조(공표·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u>군보</u>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u><신설></u>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약정) ① ----- -----<u>군보</u> <u>및 군 홈페이지</u>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u>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u>

[별표]

순창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 관련)

I. 평가항목 및 배점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소 계	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수시입출금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군 대출금리	(8) (8) (4)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 과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 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일반원칙

-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한다.
- 다.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만점을 1순위로 하여 10%씩 균등 차감한다. 다만, 항목 5(군과의 협력사업 계획)는 5%씩 균등 차감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2)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① 총자본비율(6점)
 - ②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 ③ 자기자본이익율(5점)
 - ④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나.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1) 정기예금 예치 금리(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군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1) 관내지점의 수,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8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증진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납입을 위한 타 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 운영계획 등)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인증 등 관리시스템 구축, 자금관리 및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설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

마.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 1) 지역사회기여(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실적으로만 평가)
- 2) 군과의 협력사업(2점)
- 자치단체(순창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 약정기간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계획으로만 평가)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67호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출신 권일송 작가의 작품세계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문학상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문화예술 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공모) 군수는 매년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제4조(공모 부문 및 자격) ① 공개 모집하는 공모 부문은 시 또는 수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하되,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문학 부문의 전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와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1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

제12조(이중 시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상금) 문학상은 매년 시상하고, 시상금 및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보존 및 단행본 발간) ①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 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학상 시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행본을 발간할 수 있다.

제15조(수상작의 이용) ① 군은 문학상의 홍보와 기록보존, 작품집 발간, 전시 및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수상자의 허락을 받아 수상작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수상작의 이용허락에 필요한 세부적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는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6조(실비보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68호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설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예고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설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예고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u>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69호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순창경찰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내용)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3. (생 략) <u><신 설></u> <u>제24조 ~ 제25조</u> (생 략)	제3조(지원내용) ----- -----. 1. ~ 2. (현행과 같음) <u>3.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u> 4. (현행 제3호와 같음) <u>제2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순창경찰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u>제25조 ~ 제26조</u>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70호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재원확보”를 “재원확보 및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등 기업지원 시설 운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입사보증금 및 기숙사비, 관리비, 기타 기업지원 시설의 수익금 등

제1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퇴사자 입사보증금 반환 및 기숙사 시설운영비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u>재원확보</u>를 위하여 순창군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략) <u><신 설></u>	제1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지방자치법」 제159조----- ----- <u>재원확보</u> 및 <u>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등 기업 지원시설 운영관리</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1. ~ 3. (현행과 같음) <u>4.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입사보증금 및 기숙사비, 관리비, 기타 지원지원 시설의 수익금 등</u>
제1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 4. (생략) <u><신 설></u>	제11조 (기금의 용도)----- -----. 1. ~ 4. (현행과 같음) <u>5.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퇴사자 입사 보증금 반환 및 기숙사 시설운영비 등</u>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71호

순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을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3항제3호의 위원 중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에너지·산업, 수송, 건축물, 농·축산업, 산림, 환경, 물 관리 부문 등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과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u> <u>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u> ① 군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 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순창군 <u>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u>제11조(위원회의 구성)</u>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u>제3항제3호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u>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1. <u>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u> 2. ~ 4. (생략) <u><신설></u>	<u>제3장 기후위기대응위원회</u> <u>제10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운영)</u> ① ----- ----- ----- -----<u>기후위기대응위원회</u>----- --. ② (현행과 같음) <u>제11조(위원회의 구성)</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위원회</u> ----- -----. ③ <u>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에너지·산업, 수송, 건축물, 농·축산업, 산림, 환경, 물 관리 부문 등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과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 <u><삭제></u>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④ <u>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제3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72호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 을 “생년월일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 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 기간																																
												3일														3일																																
신청인	상호 (명칭)													신청인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u>주민등록번호</u>						신청인		성명 (대표자)		<u>생년월일</u>																																									
	주 소														신청인	주 소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관리인				(전화번호 :)				설치 년도								시설현황	관리인				(전화번호 :)				설치 년도																																
	규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현황	규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설 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시설내역	시설 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시설내역	시설 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 용	여자 용	장애 인용	성인 용	유아 용	동양 식	서양 식	남자 용	여자 용	장애 인용	성인 용				유아 용	동양 식	서양 식	남자 용	여자 용		장애 인용	성인 용	유아 용	동양 식	서양 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 타올 (페이퍼 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 타올 (페이퍼 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 타올 (페이퍼 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1회 사용료		원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순창군수귀하														순창군수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구비서류												수수료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시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												없 음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시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												없 음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순창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칙을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규칙 제1333호

순창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자치법규 조문상에 반영되지 않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체계적 통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용 제명, 조문, 법률용어 등 정비) 순창군 각 부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규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이 규칙은 시행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목록(제2조 관련)

연번	관리부서	자치법규명	조항호목	현 행	개정안
1	기획예산실 (기획)	순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2	기획예산실 (감사법무)	순창군 자체감사 규칙	제1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3	행정과 (행정)	순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4	행정과 (총무)	순창군 기록관 운영 규칙	제1조	동법	같은 법
5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	인구정책과 (귀농귀촌)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	환경위생과 (위생)	순창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8	농업축산과 (원예특작)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9	장류산업 사업소 (장류산업)	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공포한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규칙 제1334호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고시 제 2026 - 154호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I. 예산편성 추진경과

- 의회예산(안) 제출일 : 2026. 7. 15.
- 예산 의 결 일 : 2026. 7. 31.
- 주요 증감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제2회추경 예산액	2026년 제1회추경 예산액	증 감	주 요 증 감 내 역	
합 계	621,112	584,492	36,620		
일반회계	603,236	566,620	36,616	○ 지방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보조조 ○ 보전재원	0 4,107 17,743 1,678 12,400 688
특별회계	17,876	17,872	4	○ 세외수입 ○ 보조 ○ 보전재원	0 0 4

II. 예산규모

- 회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제2회추경 예산액	2026년 제1회추경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합	계	621,112	584,492	36,620	6.27
일	반 회 계	603,236	566,620	36,616	6.46
특	별 회 계	17,876	17,872	4	0.02
	상 수 도 사 업	8,997	8,997	0	0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491	487	4	0.86
	새 농 촌 육 성 기 금 운 영	7,283	7,283	0	0
	공 공 주 택	1,100	1,100	0	0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5	5	0	0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고시 제2026-156호

도로명주소 직권 폐지 고시

2026년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결과 건물 등(건축물대장)이 멸실확인된 건물번호(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따라 직권 폐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5.

순 창 군 수 (인)

○ 도로명주소 직권 폐지 : 35건 (붙임 폐지 고시 조서 참조)

- 동계면 강촌길 38-3 외 3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1층 민원과(☎650-1441)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직권폐지 고지 조서

○ 도로명주소 직권폐지 정리일 : 2026. 8. 5.

순번	구분	관할 읍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건물번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비고
					폐지일	사 유	
1	건물번호 직권폐지	동계	내령리 33	강촌길 38-3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2	건물번호 직권폐지	인계	도룡리 1032-1	도사2길 59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3	건물번호 직권폐지	동계	현포리 618	동계로 8-23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4	건물번호 직권폐지	동계	이동리 215-1	동마동길 21-8	2012. 7. 4.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5	건물번호 직권폐지	동계	동심리 1352-1	동심길 35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6	건물번호 직권폐지	동계	동심리 1278	동심길 48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7	건물번호 직권폐지	인계	노동리 246	동촌길 50-22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8	건물번호 직권폐지	풍산	삼촌리 751-1	삼촌1길 128-12	2022. 1. 7.	건물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9	건물번호 직권폐지	동계	신흥리 364-1	성전길 57-4	2026. 4. 28.	건물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10	건물번호 직권폐지	동계	어치리 445	어치길 24-7	2015. 10. 15.	건물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11	건물번호 직권폐지	유등	오교리 261	오교1길 17-4	2025. 4. 8.	건물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12	건물번호 직권폐지	유등	오교리 337	오교1길 3-8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13	건물번호 직권폐지	유등	오교리 367	오교2길 14-6	2025. 3. 19.	건물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14	건물번호 직권폐지	인계	도룡리 26-3	용암길 162-31	2022. 5. 9.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15	건물번호 직권폐지	유등	무수리 932	월탄1길 6	2006. 4. 13.	건물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16	건물번호 직권폐지	동계	유산리 210-1	유산길 40-20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17	건물번호 직권폐지	적성	고원리 567-2	원촌길 18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18	건물번호 직권폐지	풍산	죽곡리 178	죽곡1길 26-17	2015. 6. 30.	건물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19	건물번호 직권폐지	인계	중산리 83	중산길 10-1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20	건물번호 직권폐지	인계	중산리 59-2	중산길 12-3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21	건물번호 직권폐지	인계	중산리 91-1	중산길 9-4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22	건물번호 직권폐지	적성	고원리 82-1	지모길 62	2025. 12. 9.	건물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23	건물번호 직권폐지	인계	가성리 102-1	차치길 21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24	건물번호 직권폐지	인계	가성리 138	차치길 29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25	건물번호 직권폐지	인계	가성리 137	차치길 32	2024. 8. 12.	건물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26	건물번호 직권폐지	적성	평남리 198	평남길 36-13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27	건물번호 직권폐지	유등	건곡리 361	학촌2길 9-14	2024. 12. 5.	건물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28	건물번호 직권폐지	인계	갑동리 361	호계길 55-24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29	건물번호 직권폐지	동계	관전리 104	충효로 456-3	2014. 4. 24.	건물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30	건물번호 직권폐지	동계	현포리 553-3	동계로 14-1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31	건물번호 직권폐지	동계	현포리 627-2	동계로 10-4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32	건물번호 직권폐지	동계	현포리 627	동계로 10-10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33	건물번호 직권폐지	동계	현포리 630-1	동계로 7	2020. 2. 3.	건물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34	건물번호 직권폐지	동계	현포리 538-2	동계로 7-4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35	건물번호 직권폐지	동계	현포리 538-2	동계로 7-8	2026. 4. 17.	건물철거 후 건물명실 확인	
합계		35건					
*도로명주소(건물번호)폐지일 : 건축물대장 말소일 또는 건물명실확인일(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순창군 고시 제2026-15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11.

순 창 군 수 (인)

○ 도로명주소 폐지 : 2건

구분	관할읍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건물번호)	건물번호		비고
				폐지일	사유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1층 민원과(☎650-1441)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붙임]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구분	관할읍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건물번호)	건물번호		비고
				폐지일	사유	
1	금과면	장장리 104-2	서암로 240-69	2026.7.27.	건축물대장 말소	
2	금과면	동전리 274-1	대장길 23	2026.7.28.	건축물대장 말소	

순창군 고시 제2026-160호

적성면 괴정지구 개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고시하고, 같은 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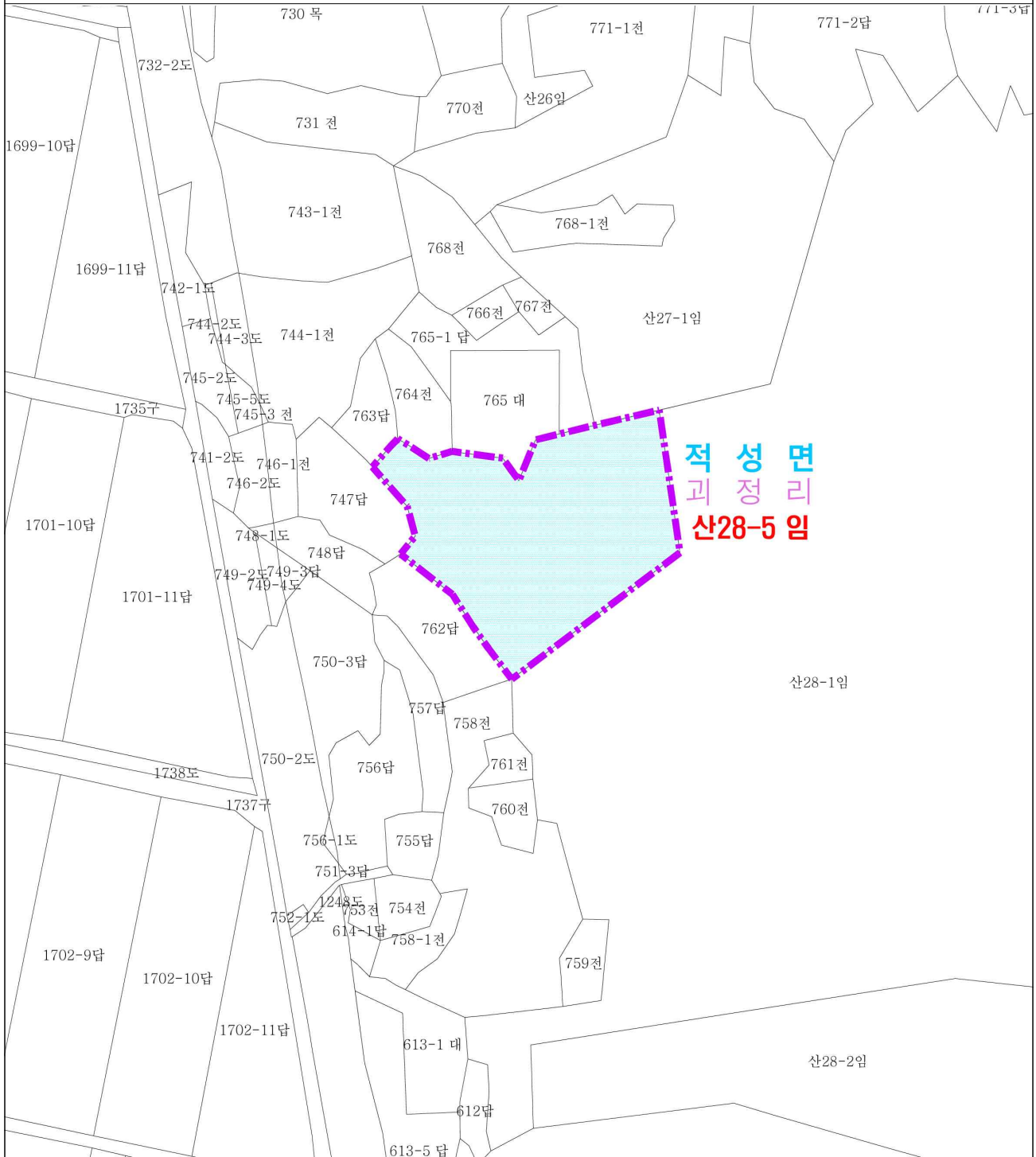
2026년 8월 18일

순창군수

1. 사업의 목적	개간사업(밭작물 재배)	
2. 사업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산28-5번지	
3. 사업시행자	성명	양 *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0로 000, 000동 000호
4. 지적/시행면적	4,010㎡ / 4,010㎡	
5. 사업소요비용	4,850,000원	
6. 사업기간	2026. 08. 07. ~ 2027. 08. 06.	
7. 사업효과	농가소득 향상	
8. 이의신청	순창군청(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 ☎063-650-1836)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지형고시도면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산28-5번지



구 적 표 (적성 괴정 개간)

No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지	제외지	용도지역	산지현황
1	산28-5	임	4,010	4,010	-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합계	1필지		4,010	4,010	-		

산28-3임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813호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가. 행정안전부 「2026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응 및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 순창공립미술관 대관료 관련 조항을 개선안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 나. 미술관 등록으로 인한 미술관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관람 제4조(개관 및 휴관)

– 음력 설날 및 추석의 월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정기 휴관일로 개정함
나. 대관 제12조(대관료)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 제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

※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사항
다. 위원회운영 제27조(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 규정을 정비함

라. 강좌 제39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 재료비 별도 징수에 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함

마. 제8장 운영·관리 (제41조~제42조)

–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기념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바. 제9장 보칙

– 제8장 운영·관리 신설로 인하여 제8장 보칙을 제9장 보칙으로 순연함
사. 별표1~별표3

– 별표 1 미술관의 명칭 개정 : 순창공립미술관 본관(기존 : 옥천골미술관),
기획전시실(기존 : 섬진강미술관 별관),
섬진강갤러리(기존 : 섬진강미술관 신관)

– 별표 2 개정 : 대관 구분 및 면적 변경

– 별표 3 신설 : 공립미술관 대관료 반환 기준 신설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문화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 063-650-1659, Fax 650-16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시설팀
(☎063-650-16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력 설날 및 추석(전일 포함 2일간). 다만, 해당일이 월요일인 경우 제3호를 우선 적용하여 휴관일을 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군수는 별표3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으며,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3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생에게 이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을 “제9장 보칙”으로 하며, 제8장(제41조 및 제4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운영·관리

제41조(수익사업) ① 군수는 미술관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콘텐츠를 활용한 유통·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간하는 간행물과 아트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미술관 수익금은 군의 수입으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트상품 등을 할인할 수 있다.

제42조(기념품) 군수는 미술관의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기념품 및 아트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2. 설문조사 참여자
3. 미술관 행사 참여자
4. 미술관 관련 추진사업 협력자
5. 작품 기증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 2. (생 략) 3. 음력 설날 및 추석(전일 1일 포함하여 2일) 4. (생 략) ② (생 략)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음력 설날 및 추석(전일 1일 포함 2일간). <u>다만, 해당일이 월요일인 경우 제3호를 우선 적용하여 휴관일을 정한다.</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대관료) ① · ② (생 략) ③ 대관료를 이미 납부하고 미술관 또는 대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한다. 1. 미술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술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3. 대관일 3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4. 대관일 2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반환없음 ④ (생 략)	제12조(대관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별표3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생 략)	제2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으며,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신청	제39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 -----

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장 보칙

제41조 ~ 제43조 (생 략)

----- . 다만, 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생에게 이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운영관리

제41조(수익사업) ① 군수는 미술관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콘텐츠를 활용한 유통·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간하는 간행물과 아트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미술관 수익금은 군의 수입으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트상품 등을 할인할 수 있다.

제42조(기념품) 군수는 미술관의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기념품 및 아트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2. 설문조사 참여자
3. 미술관 행사 참여자
4. 미술관 관련 추진사업 협력자
5. 작품 기증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장 보칙

제43조 ~ 제45조 (현행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와 같음)

【별표 1】

공립 미술관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순창공립미술관 본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로 81	
순창공립미술관 기획전시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평남길 113	
섬진강 갤러리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평남길 122	

【별표 2】

공립미술관 대관료 (제12조제2항 관련)

미술관	구분 및 용도	사용 기준	면적 (㎡)	금 액 (천원미만 절사)	비 고
순창공립 미술관 본관	전시실(1층)	1일	162	38,000	○ 대관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8시간기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당 240원 적용 (냉난방비 포함)
	다목적실(2층)	1일	59	14,000	
	창작실(2층)	1일	20	4,000	
기획전시 실	전시실	1일	121.5	29,000	
섬진강 갤러리	전시실	1일	95.85	23,000	

【별표 3】

공립미술관 대관료 반환 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환급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대관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
	○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 및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 대관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3. 대관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대관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
	○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 대관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 이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814호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참고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존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순창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 나. 조례의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등 기능(제1~5조)
- 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위원의 자격, 위원의 선정, 위원의 임기, 위원의 대우, 위원의 의무, 위원의 해촉, 자치회장, 회의 등, 간사 또는 사무국, 감사,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주민총회, 자치계획의 수립등(제6~19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정보공개, 감독(제20~23조)
마. 보험,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연계 법인 설립,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운영, 운영세칙, 재검토기한(제24~29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행정과

(☎ 063-650-1223, Fax 063-650-12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 주무관(☎063-650-1223)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창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읍·면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 화합 행사,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지역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그 밖에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군 및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작은 도서관 운영, 공원·공중화장실·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의 정수) ① 위원은 최소 20명 이상, 최대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비율은 5:5로 한다. 또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읍·면장과 기관·사회단체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의 공개추첨 대상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 추가 모집을 한다.

③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 주민자치와 밀접한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는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⑧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⑪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 방식으로 홍보 할 수 있다.

⑫ 해당 읍·면이 지역구인 순창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표결권이 없는 당연직 고문으로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의 연임에 대해서는 주민총회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자진 사임할 경우에는 사임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제11조제1항의 의무에 대한 미준수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자치회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간사 및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읍·면 소재 사업장·학교·기관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

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의 자치계획안

4.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5.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6.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및 추진

7.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추진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9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읍·면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6.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계획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 ③ 군수와 해당 읍·면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액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와 해당 읍·면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위원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③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 및 주민, 관계 공무원의 주민자치 관련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⑩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의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리(里) 단위의 주민조직 및 읍·면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정보공개)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8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

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군수가 제20조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군수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0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제26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10항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운영세칙)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추천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간사의 선임 또는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분회(또는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8.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연계법인·공유자원·공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11.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군수는 이 조례에 대하여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시행일인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를 공포한 날이 2026년 10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은 순창군 읍·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및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7조 및 제8조 개정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본다.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815호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되는 읍·면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및 인용 조항 정비(제1조)

나. 주민자치회 설치 읍·면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근거 단서 신설(제15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순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행정과

(☎ 063-650-1223, Fax 063-650-12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 주무관(☎063-650-1223)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와 제17조의2”로,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직능·자생단체,취미·동호회”를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참여의 보장”을 “참여”로, “조장”을 “보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 “”를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기능및”을 “주민자치기능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문제토론,마을환경가꾸기,자율방재활동,자원봉사활동”을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증진,마을문고,청소년공부방”을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불구”를 “규정에도 불구”로, “갇추어 수행”을 “수행”으로 한다.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제6조제1항 중 “갇추어야 한다”를 “갇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을 “재정계획을 포함한”으로,

“계획을 수립”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근무시간등”을 “근무시간 등”으로, “징수액중”을 “징수액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있으며”를 “있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비등”을 “운영비 등”으로, “징수가능한 “수강료””를 “징수가능한 “수강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정책수립,연구·개발,협조·지원등 을”을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관·단체등”을 “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요율등”을 “요율 등”으로, “범위내에서 “사용료 “”를 “범위내에서 “사용료””로, “정하며. “수강료 “”를 “정하며, “수강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저소득자등”을 “저소득자 등”으로, “인정 되는”을 “인정되는”으로,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징수한 “수강료””를 “징수한 “수강료””로,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징수·관리등”을 “징수·관리 등”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읍·면장”을 “군수와 읍·면장”으로, “노후및”을 “노후 및”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요구 하거”를 “요구하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당 하다고”를 “타당하다고”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기별로 위원회”를 “위원회”로,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를 “매년”으로 한다.

제15조 중 “읍·면의”를 “읍·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읍·면은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6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을 “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계,언론계”를 “교육계, 언론계”로,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을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를 “매년”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를 “일반 주민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을 “위원장·부위원장·위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관장하고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연수등”을 “교육·연수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하여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할구역외”를 “관할구역 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월1회”를 “격월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읍·면장”을 “군수와 읍·면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비치”를 “관리”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4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u> 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u>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제12조와 제17조의2</u> ----- ----- ----- ----- ---- <u>관한</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단체”란 관할 구역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u>직능·자생단체,취미·동호회</u>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u>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u> -----.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민 <u>참여의 보장</u> 및 자치활동의 <u>조장</u> 3. ~ 5. (생략)	제3조(원칙) ----- ----- -----. 1. (현행과 같음) 2. --- <u>참여</u> ----- <u>보장</u>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등) ① (생략)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u>○○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 “로 한다.</u>	제4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u> ----.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u>주민자치기능</u>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	제5조(기능) ① ----- <u>주민자치기능</u> 및 ----- ----- -----.

다.

1. 지역문제토론,마을환경가꾸기,자율방재활동,자원봉사활동 등 주민 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전시회,생활체육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마을문고,청소년공부방 등 지역 복지기능
4. ~ 6. (생략)
- ② (생략)
- ③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 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②·③ (생략)
- ④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② (생략)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자원봉사활동 -----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
4.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 규정에도 불구----- 수행-----.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
-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
 - 재정계획을 포함한
 -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제7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근무시간 등----- 징수액 중 -----.
- ④ -----

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 할수 있으며.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등 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주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읍·면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장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② (생략)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생략)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등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

있으며,

⑤ ----- 운영비 등 ----- 징수가능한 “수강료” -----

⑥ -----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

⑦ ----- 기관·단체 등 -----

제10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요율 등 ----- 범위내에서 “사용료” ----- 정하며, “수강료”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저소득자 등 ----- 인정되는 ----- 사용료 등을 -----

⑥ ----- 징수한 “수강료” ----- 매년 -----

로 반기경과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읍·면장은 “사용료 “의 징수·관리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 “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 “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② (생략)

-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④ (생략)

-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생략)

- ② 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읍·면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군수

-----.

- ⑦ ----- 징수·관리 등-----

----- 위원 중-----

-----.

제11조(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사용료 등-----

-----.

④ (현행과 같음)

- ⑤ 군수와 읍·면장----- 노후 및-----

-----.

제12조(주민참여) ① (현행과 같음)

- ② -----

----- 요구하거-----.

- ③ -----

----- 타당하다고 -----
-----.

제14조(보고) ① ----- 매년

-----.

- ② -----

----- 위원회-----
----- 매년-----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설치) 읍·면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단서 신 설>

제16조(기능)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생략)

제17조(구성 등) ① (생략)

② 읍·면장은 당해 읍·면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는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제15조(설치)

음 · 면

----- . 다
만,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읍·면은 주민자
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6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정에도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 중

1. · 2. (현행과 같음)

③ 교육계, 언론계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

지 않도록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매년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 ~ ④ (생략)

-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략)

제20조(해촉) ① 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 5. (생략)

- ② (생략)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일반 주민에게 -----
-----.

- ⑦ 위원장·부위원장·위원 -----
-----.
-----.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 관장
하고 총괄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

----- 교육·연수
등-----.

제19조(간사) ① ----- 위원 중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해촉) ① -----

----- 위원회
-----.

1. ----- 관할구역 외-----

2.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회의)① ----- 격월로

-----.

② ~ ④ (생 략)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와 읍·면장-----
-----.

제22조(회의록) -----
----- 관리-----.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816호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원을 정비하여 자치기구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창군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원에 주민자치회장 추가(제14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행정과

(☎ 063-650-1223, Fax 063-650-12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 주무관(☎063-650-1223)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이용시간)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읍면장은 프로그램 활성화 및”을 “읍·면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로, “이용시간”을 “이용시간”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휴관일 5일전까지 자치센터내에 게시하여야”를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자”를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출입금지”를 “출입제한(단, 보호자 동행시 출입 허용)”으로 한다.

1. 술에 취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자

제6조 중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을 “읍·면장은 주민자치센터”로, “안전사고”를 “안전사고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운영자는”을 “읍·면장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경험”을 “경험”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마친후 위촉 한다”를 “마

친 후 위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면장” 을 “읍·면장”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1 호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제12조 중 “별표1의” 를 “별표1에서” 로, “읍 면장” 을 “읍·면장”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면장” 을 “읍·면장” 으로, “만료 1개월” 을 “만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읍면장은” 을 “읍·면장은” 으로, “읍면장,” 을 “읍·면장,” 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구성 등)” 을 “(협의회 구성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자치센터” 를 “군수는 주민자치센터” 로, “효율적” 을 “효율적인” 으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 ” 를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 ”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장, 총무” 를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를 “회장, 부회장, 간사”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을 “회장, 부회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총무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를 “간사는 회장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필요하다고” 를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협의회장이” 로 한다.

제17조 중 “정한다” 를 “정할 수 있다” 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이용시간) <u>(이용시간)주민자치센터</u> 이 용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u>읍 면장은 프로그램 활성화 및</u> 자치센터 시설 관리와 이용주민의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 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u>이용시 간</u> 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이용시간) <u>주민자치센터</u> -----. ----- <u>읍·면장은 프로그램 활성화,</u> ----- ----- <u>이용시간</u> -----.
제3조(휴관)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 는 <u>휴관일 5일전까지 자치센터내에 게시하여</u> <u>야</u> 한다. 다만, 시설의 수리 등 부득이할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공고·게</u> <u>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u> -----.
제5조(이용제한) <u>운영자</u>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 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u>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u> <u>트 이상인 자</u>) 2. (생략) 3. 체력단련실은 위험방지를 위하여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u>출입금지</u> 4. (생략)	제5조(이용제한) <u>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u> ----- -----. 1. 술에 취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u>자</u> 2. (현행과 같음) 3. ----- ----- <u>출입제한(단, 보호자 동행시</u> <u>출입 허용)</u> 4. (현행과 같음)
제6조(책임) <u>주민자치센터</u> 를 이용하는 이용자 가 제5조에 준하지 아니하여 <u>안전사고</u> 발생 시 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책임) <u>읍·면장은 주민자치센터</u> ----- <u>안전사고가</u> -----.
제7조(변상조치) ① <u>운영자</u> 는 이용자가 주민 자치센터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 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변상조치) ① <u>읍·면장은</u> -----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강사의 자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필요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한 자

제10조(강사의 위·해촉) ① 읍면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위촉한다.

② 읍면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1조(강사의 의무) ① (생 략)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고, 제2호서식에 의거 수강생의 출석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조례 별표1의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읍 면장이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외수입 처리한다.

제13조(위원의 모집방법 및 선정) ① 읍면장은 위원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위원을 모집토록 하고, 위원 신청 및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9조(강사의 자격)

-----.

1. (현행과 같음)
2. ----- 경험

제10조(강사의 위·해촉) ① 읍·면장

마친 후 위촉한다.

② 읍·면장-----
-----.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강사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1호서식-----
-----.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별표1에서 ----- 읍·면장

-----.

제13조(위원의 모집방법 및 선정) ① 읍·면

장----- 만료

-----.

1. 2. (생 략)

② 읍면장은 차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읍면장,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모집정원 미달 등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4조(구성 등) 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창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순창군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를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임기는 조례 제17조의 임기에 준한다.

⑤ 총무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및 협의한다.

1. 2. (생 략)

3.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운영세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읍·면장은 -----

읍·면장, -----

-----.

-----.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주민자치센터 ----- 효율적인 -----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 -----.

② 협의회는 -----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

③ ----- 회장, 부회장, 간사-----
-.

④ 회장, 부회장-----
-----.

⑤ 간사는 회장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제15조(기능)

-----.

1. 2. (현행과 같음)

3. -----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협의회장이 -----

제17조(운영세칙)

----- 정할 수 있다.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817호

순창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저연차 직원 증가에 따른 법률·고충민원 자문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고문변호사 정원을 확대하여 직원들에게 적시성 있는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 확대(안 제2조)
- 나. 고문변호사 위촉 기간 변경(안 제4조제1항)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 [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 063-650-1171, 1104 Fax 063-653-114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감사법무 담당자 (☎063-650-11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순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이내”를 “5명이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u>3명</u> 이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 <u>5명</u> 이내 -----.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u>1년</u> 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4조(위촉기간) ① ----- <u>2년</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824호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을의 취락형태와 행정 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이장 월정수당 지급 및 사무인계 인수 규정을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탈자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안 제3조 제4항, 제8조의2 제1,2항, 제22조 제2항)

나. 이장 월정수당 지급 주체 규정 및 지급 시기 정비 (안 제8조 제1항)

다. 복흥면 대방리 용지마을을 용지마을과 금방동마을로 분리(안 별표 2)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행정과
(☎ 063-650-1225, Fax 063-650-12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 주무관(☎063-650-1225)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주주민” 을 “주민” 으로 한다.

제6조 중 “①”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이장에게는” 을 “읍·면장은 이장에게” 로 하고, “보수지급 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를 “보수지급일에 맞춰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각종잡부금” 을 “각종 잡부금” 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단체상해보험가입” 을 “, 단체상해보험가입” 으로 한다.

제13조 중 “10일이내” 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마을에서 인사중에서” 를 “마을 인사 중에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하부조직) ① ~ ③ (생략)	제3조(하부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u>주주민</u> 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④ ----- --- <u>주민</u> ----- ----- -----.
제6조(이장의 임무) ① (생략)	제6조(이장의 임무) (현행 제1항과 같음)
제8조(실비보상) ① <u>이장에게는</u>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u>지급함을 원칙으로</u> 한다.	제8조(실비보상) ① <u>읍·면장은</u> <u>이 장 에 게</u> ----- ----- ----- <u>맞춰</u> <u>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편의제공) ① <u>이장은</u>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u>각종</u> <u>잡부금</u> 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의2(편의제공) ① ----- <u>각종</u> <u>잡부금</u> ----- ----- ----- ----- -----.

[illegible]

②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교육 및 산업시찰, 국내외 연수(이장 정수의 10%범위내),단체상해보험가입, 순창군이장단연합회 운영, 체육·단합행사 및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방송장비 등)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인계·인수)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인수자·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

② _____, 단체
상해보험가입 _____.

제 13 조 (사 무 인 계 · 인 수)

사
무 인 수 인 계 서

다.

제22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감사·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인사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하며,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2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마을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읍면명	리명	리장 정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읍면명	리명	리장 정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북흥면	대방	2	칠현	1	(생략)	북흥면	대방	3	칠현	1	(생략)
			<u>용지</u>	1	용지				<u>용지</u>	<u>1</u>	<u>용지 일원</u>
				2	금방동				<u>금방동</u>	<u>1</u>	<u>금방동 일원</u>
합계	131	<u>320</u>		664		합계	131	<u>321</u>		664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순창군공고 제2026 - 825 호

순창군 금고 지정 계획 공고

순창군 금고 약정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 의거 차기 순창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순 창 군 수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약정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3. 금고의수 : 2개금고
4. 신청자격

○ 제1금고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순창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제2금고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순창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서 순창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5. 금고별 취급회계 (17)

○ 제1금고 : 일반회계(1), 특별회계(5), 기금(2)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새농촌
육성기금특별회계, 공공주택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 제2금고 : 기금(9)

(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투자
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 특별회계와 기금은 약정기간중 신규 설치 또는 폐지될 수 있으며,
신설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군수가 약정금고 중 지정

6. 군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세출금의 수납 및 지급
-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휴 자금의 관리와 보관,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7. 신청절차

○ 군 금고 지정 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14.(금) ~ 9. 3.(목) (20일간)

○ 금고지정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6. 8. 21.(금) 14:00

- 장 소 : 순창군청 재무과(1층)

*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관련서류 열람

- 기 간 : 2026. 8. 24.(월) ~ 8. 26.(수) (3일간) 09:00~18:00(근무시간)
- 장 소 : 순창군청 재무과 (1층)
- 열람서류 : 2025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2026년 세입세출예산서
- * 군 홈페이지(www.sunchang.go.kr) /정보공개/재정정보에서 상시 열람가능

○ 신청제안서 접수

- 기 간: 2026. 9. 7.(월) ~ 9. 8.(화)(2일간) 09:00~18:00(근무시간)
- 장 소: 순창군청 재무과(1층)
- 제출부수: 제안서13부(원본1부, 사본12부) ⇒ 각각 증빙 및 요약분 포함
- ※ 사본 12부는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사용인감 지참
- 제출서류 : 신청서는 반드시 순창군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
 - 신청서(제안서, 요약서) 및 증빙서류(원본대조필, 색인 표시)
 -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
 - 각서 등 평가에 필요한 기타 요구 자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기타사항
 - 신청제안서는 순창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 제출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8. 평가 및 지정방법

-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에 따라 순창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 평가함
-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로 지정
 - 선순위 금융기관이 약정(또는 지정) 포기시,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

- 2순위 이하 모든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1순위 금융기관과 약정 체결
- 심사기준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되,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프레젠테이션 및 면접심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서는 사전 준비 및 면접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평가항목 및 배점·평가기준 : [별표] 참조

- 평가결과 총점이 동점일 경우
 - [별표]에서 점수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10. 약정 및 손해배상

-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약정의 포기 또는 금고 약정 체결의 지연 등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지정 또는 약정 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 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 인수·인계 : 금회 지정된 금고 책임하에 수행
 - 신·구 금고 간 금고 업무 상호 인수·인계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해서는 만기 도래한 후 인수·인계토록 함
-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일자부터 정상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1.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2. 기 타

- 제안서는 『순창군 금고지정 신청안내(별도 배부)』에 따라 작성
- 제안서 등 제출된 일체서류(내용)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마감 후, 금융기관의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시 군에서 요구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평가기준과 다르게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며, 제시된 항목 이외의 불필요한 내용은 첨부할 수 없음
- 평가자료 작성 시 계획 등 자료의 수치는 ‘약’, ‘대략’, ‘이내’, ‘이상’ 등 모호한 범위가 아닌 명확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제출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 문 의 : 순창군청 재무과 징수팀 (☎063-650-1353)

[별표]

순창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I. 평가항목 및 배점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소 계	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수시입출금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군 대출금리	(8) (8) (4)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 과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II.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일반원칙

-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한다.
- 다.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만점을 1순위로 하여 10%씩 균등 차감한다. 다만, 항목 5(군과의 협력사업 계획)는 5%씩 균등 차감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2)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① 총자본비율(6점)
 - ②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 ③ 자기자본이익율(5점)
 - ④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나.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1) 정기예금 예치 금리(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군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1) 관내지점의 수,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8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증진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납입을 위한 타 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

운영계획 등)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인증 등 관리시스템 구축, 자금관리 및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설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

마.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1) 지역사회기여(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실적으로만 평가)

2) 군과의 협력사업(2점)

- 자치단체(순창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 약정기간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계획으로만 평가)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832호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 9기 공약사업인 순창군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를 『순창군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로 명칭 및 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를 “순창군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로 개정
- 나.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 대상범위, 지원내용, 지원금액(안 제1~4조)
- 다. 학습활동비 지원방법, 운영(안 제6~7조)
- 라. 환수(안 제9조)
- 마. 시행일, 다른법령과의 관계 (부칙 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행정과

(☎ 063-650-1236, Fax 063-650-12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 주무관(☎063-650-1236)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창군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관내 학생들에게 정규교육과정외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함은 물론 나아가 순창군의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자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습활동비”란 학업능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범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7세에서 18세 사이의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원 수강료

2. 온라인 학습콘텐츠 이용료

3. 학습지

② 지원금액은 학생 1명당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단,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셋째아 이상)가족 자녀중 중·고등학생은 종전과 같이 월 12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 대상 학생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지원금액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월 학습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7조(운영) ① 순창군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사업은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순창군옥천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학습시설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학습활동비를 지원받는 학습시설 등은 지원대상 학생의 출석과 학습지도, 지원금의 관리에 신의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반 책임을 진다.

제9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